

보도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1. 1. 18(화) 배포시		
배포일시	2011. 1. 18(화)	담당부서	재정정책국 성과관리과
담당과장	이상원(2150-5370)	담당자	김재용 사무관(2150-5375)

제목 :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

□ 재정부는 재정운영 과정에서 성과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부처의 자발적인 성과관리 강화노력을 유인하기 위한 **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* 개선방안을 마련**,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임

*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도입·운영 중인 제도로 성과목표관리제도와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로 구성 (각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)

□ 그간 재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운영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효율성을 제고하여 왔으나

○ 재정사업자율평가지 부처 자체평가의 관대화 경향으로 부처의 자발적인 성과관리 역량강화로 연결되지 못하고,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 재정부가 다시 재평가 수준의 확인·점검을 실시하는 등 행정낭비를 초래하며

○ 평가결과에 따른 패널티 및 인센티브가 획일적, 형식적으로 운영 되어 부처의 실질적인 사업효율화 노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

○ 개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정보이력 관리시스템 부재로 평가 결과가 단년도 예산편성 활용 외에 지속적인 사업개선 유도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

□ 이에 따라 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재정사업 평가시부터 적용할 계획임

* 정부업무평가위원회(위원장 : 국무총리)의 심의·의결을 거쳐 2011년 재정사업 평가시행계획 확정(1.7)

○ **(부처 자체평가의 상대평가제 도입)** 부처 자체평가지 '우수'이상 등급은 20%이내, '미흡'이하 등급은 10% 이상이 되도록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

- '08~'10년간 '우수'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업비율이 88.8%에 이르고 '10년 473개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'미흡' 판정을 받은 사업이 1개에 불과한 등 부처의 자체평가 관대화 경향이 심화 추세

⇒ 자체평가 내실화로 불필요한 확인·점검에 따른 행정부담 축소 및 부처의 자체적인 성과관리 역량 강화 기대

○ **(평가결과 활용의 실효성 제고)** '미흡'등급 사업에 대한 10% 이상 예산 삭감원칙을 개선하여 사업유형별로 패널티를 다양화하고 '우수'등급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

- 일반재정사업과 달리 국정과제 등 정책사업과 기초생활보장 등 의무지출사업의 경우 '미흡' 판정을 받아도 예산삭감이 어려워 평가결과의 재정운영 환류에 한계

⇒ 정책, 의무지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대신 여비, 업무추진비 등 사업관련 운영비를 삭감토록 하여 '미흡'사업에 대한 패널티의 실효성을 제고

- '우수' 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수사업 증액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"미흡등급만 면하면 된다"는 부처의 그릇된 인식이 팽배

⇒ 사업마무리 등으로 예산증액이 곤란한 사업 외에는 원칙적으로 증액편성되도록 하고, 우수부처·사업담당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신설

- (성과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도입) 부처의 재정성과 관리정보와 예·결산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·운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(dBrain) 개편
 - 기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(dBrain) 상의 사업별 예·결산 정보에 성과정보, 자율평가 결과,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 사업 성과이력을 추가하여 종합적·체계적으로 분석·관리
- ⇒ 성과정보와 예산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유도

기획재정부 대변인

1. 성과목표관리제도

- (개념) 부처별로 성과목표·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('03년 시행)
 - 성과계획서 : 전년도(Y-1)에 다음 연도(Y) 성과목표, 성과지표, 성과지표의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
 - 성과보고서 : 다음 연도(Y+1)에 해당 연도(Y)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, 미흡원인 등을 보고*

* 사업별 성과목표달성 외에 사업계획 적정성, 집행실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별도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통해 실시 (부처에서 자체평가 → 재정부에서 확인·점검)

- (기대효과) 공공부문의 성과마인드 확산, 결과와 책임 중심의 사업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효과
 -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함께 해당부처의 성과목표 달성과의 연계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가능
 - 성과중심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도록 하며, 책임성 강화
 - (법적근거)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정('07.1 시행)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
 -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각 중앙관서의 長 및 기금을 관리·운영하는 자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재정부로 제출토록 규정 (국가재정법 제8조)
 - 성과계획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(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)로, 성과보고서는 결산보고서 구성항목(국가회계법 제14조)으로 규정
 - '09년 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의 국회제출 의무화 (국가재정법 부칙 제4조)
- * 성과계획서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매년 10월 초(차기 회계연도 90일전), 성과보고서는 결산보고서의 구성항목으로 5월 말 국회제출

2.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

□ 주요내용

- **(개념)** 사업수행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재정당국이 예산심사에 활용하는 제도('05년 시행)
- **(대상사업)** 각 부처가 매년 전체 재정사업 중 1/3에 해당하는 사업을 재정부와 협의하여 선정·평가 단 경상경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
- **(평가항목)** 계획·관리·성과/환류 단계의 12개 공통지표 및 사업부문·유형별 1~2개 특성지표 적용
- **(평가결과 산출)** 평가지표별로 '예', '아니오'로 평가하여 '예'로 평가된 질문의 점수를 종합 → 사업별로 5단계 등급화

* 5 등급 : 매우 우수 / 우수 / 보통 / 미흡 / 매우 미흡
(90점 이상) (89~80점) (79~60점) (59~50점) (50점 미만)

- **(평가결과 활용)** '우수'이상 등급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'미흡'이하 등급사업은 수정평가를 통한 등급개선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연속 10% 이상 삭감

(「'1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」에 명시)

- **(평가과정)** 평가지침 사전제시(전년도) → 부처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제출(1~3월, 각 부처→재정부) → 확인·점검*을 통해 부처 평가점수 수정(4~6월, 재정부)

※ 조세연, KISTEP 등 전문연구기관의 1차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대면심의를 통해 최종 결과 확정

- **(법적근거)** 국가재정법 제8조 6항 및 동시행령 제3조

법제8조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.

시행령 제3조(재정사업의 성과평가)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(이하 "기금관리주체"라 한다)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(이하 "재정사업자율평가"라 한다)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(생략)